

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
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서미화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31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6.

발 의 자 : 서미화·오세희·이연희
이정문·이개호·이학영
박용갑·윤준병·박홍배
양문석·이용선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의사가 확인된 경우 그 즉시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이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또는 그 가족이 장기기증을 원하는 경우 장기기증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조치를 수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실정임.

이에 장기기증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연명의료중단결정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장기기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9조제1항 단서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서미화위원이 대표발의한 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7313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
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환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환자의 장기등(「장기등 이식에 관
한 법률」 제4조제1호의 장기등을 말한다)을 기증하려는 의사표시를
한 경우에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기 전 「장기등 이식에
관한 법률」 제12조, 제14조, 제17조,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른 조치
와 그 밖의 장기기증을 위한 처치 등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 행 등) ① 담당의사는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 즉시 연명의료 중단등결정을 이행하여야 한다. <u><단서 신설></u>	제19조(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 행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<u>다만, 환자 본인 또는 그 가족</u> <u>이 환자의 장기등(「장기등 이</u> <u>식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호</u> <u>의 장기등을 말한다)을 기증하</u> <u>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</u> <u>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</u> <u>기 전 「장기등 이식에 관한</u> <u>법률」 제12조, 제14조, 제17조,</u> <u>제22조 및 제26조에 따른 조치</u> <u>와 그 밖의 장기기증을 위한</u> <u>처치 등을 할 수 있다.</u>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